

의안번호	2201362
의 퇴 인	김태년의원
회 답 일	2024. 07. 22.
추계번호	24A1649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작성,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8,000만원, 2029년 1억 8,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1억원(연평균 2억 2,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00	—	—	—	—	200	40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작성 (안 제7조)	162	162	162	162	162	810	162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안 제8조)	18	18	18	18	18	90	18
합 계	380	180	180	180	180	1,100	22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함(제2항) ○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8조(국가반도체 위원회)	○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3항) － 1.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됨(제4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3.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 4.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5.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6.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사업자의 반도체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1. 시제품 생산 및 정밀 검사 - 2. 클린룸을 포함하여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고가의 제조 장비 도입 - 3.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설비 -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안 제10조(반도체 특구의 지정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¹⁾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 2.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 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²⁾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3항) -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2.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3.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 4. 그 밖에 반도체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안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1.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 3.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반도체 특구 내 설비투자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함(제2항)³⁾ － 1.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2.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 4. 간선도로 - 5.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6.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 7. 그 밖에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 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5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6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 특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7항)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8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12항) － 1.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 2. 반도체 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 3. 반도체 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반도체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반도체 특구 내 토지 등 취득 비용	
6	안 제16조(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조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제1항)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제3항) － 1. 반도체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반도체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6.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사업 － 7.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업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유치사업 - 8.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 설치된 시·군 등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7	안 제18조(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1.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 특구 내 설립 및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 특구로 이전(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3.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재량규정
8	안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정부는 반도체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20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7.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전된 대학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10	안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 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 2. 입주국내복귀기업 -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7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
3	안 제8조(국가반도체위원회)	○	—
4	안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5	안 제10조(반도체 특구의 지정 등) 안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	
6	안 제16조(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조성)	×	○ 안 제16조제1항은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의 조성을 규정하면서 안 제16조제3항은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의 용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제4항은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기금 용도의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362)
부칙 제3조(반도체 특구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7	안 제18조(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8	안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9	안 제20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	
10	안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	○ 안 제21조는 입주외국인투자 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고 임대료 감면 및 시설 설치 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제1조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5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연구용역비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인 1억 9,500만원을 참조하고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5년에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1]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실시년도	예산(백만원)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환경부)	2020	460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전략(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90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150
평 균		19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00	-	-	-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안 제7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작성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통계작성 비용은 실태조사용역비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실태조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작성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⁴⁾⁵⁾의 2023년 결산 기준 연구용역비를 참조하여 추계기간 동안 매년 1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8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 작성 (안 제7조)	162	162	162	162	162	810	1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안 제9조)

- 비용추계 대상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민간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한 값에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민간위원의 수는 15명,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
 - － 안 제8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3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호는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4) 세부사업 코드: 3551-390

5)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통해 국내 항공제조산업 기업체의 일반현황 및 생산·수주·고용·투자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항공제조산업 정부정책 및 장단기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위원 4명의 정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4명(안 제8조제4항에 따른 간사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함)인 것으로 간주하여 민간위원의 수는 15명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300,000원⁶⁾으로 가정
 - 1일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 운영비는 회의자료 배부, 인쇄물 제작 등에 관한 비용으로 위원 1인당 5만원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안 제8조)	18	18	18	18	18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1회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assembly.go.kr

[참고자료]

반도체산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R&D) (3171-419)	일반회계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구성하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지원	4,500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 (3171-433)	일반회계	○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구미 국가산단 1~3공단 간 연결성 강화 위한 교량 신설 지원	20,000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3161-319)	일반회계	○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취준생 교육을 통한 반도체 현장인력 양성	5,013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 (3161-323)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 운영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3,700
반도체아카데미구축 (3161-329)	일반회계	○ 반도체 산업계 수요의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4,260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 인력양성(R&D) (3161-416)	일반회계	○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을 통해 기업 수요형 R&D 과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초격차 핵심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11,974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3561-302)	일반회계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18,360
시장선도를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3561-305)	일반회계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필요 한 핵심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30,41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설계,제조)(R&D) (3561-307)	일반회계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 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 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62,907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R&D) (3561-308)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핵심IP(반도체 설계) 확보를 통한 국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파운드리-팹리스 선순환 생태계 구축	1,122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 육성기술개발(R&D) (3561-311)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육성	3,328
화합물소재기반 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R&D) (3561-317)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 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7,393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R&D) (3561-418)	일반회계	○ 수요 연계형 과제 추진체계 구축과 5代 신산업분야(자동차, 에너지, 도심항공, 헬스케어, AI스마트홈) 품목선정·지원을 통한 新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10,500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 기술개발(R&D) (3561-422)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 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14,000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R&D) (6431-534)	기후기금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2,594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환경조성 (3171-304)	일반회계	○ 팹리스기업 창업초기 인프라지원, 설계환경지원, 시제품(MPW) 제작지원을 통한 설계 인프라 제공	9,625
시스템반도체 IPBank 플랫폼 구축 (3171-315)	일반회계	○ 단기수요대응, 핵심IP확보, IP선순환 생태계시스템구축을 통한 반도체 국가전략자산 확보 및 플랫폼화	5,482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3171-372)	일반회계	○ 수요기업의 니즈와 공급기업의 기술을 온라인 플랫폼(COMPASS)에 등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매칭된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8,050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 (3171-424)	일반회계	○ 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 완화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양산단계에서의 실증 지원체계 구축	2,000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 구축 (3171-432)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지원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팹리스, IP 기업의 반도체 설계와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3,000
지능형반도체개발실증지원 (3171-436)	일반회계	○ 지능형 반도체 설계·생산 경쟁력 및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설계툴 및 시제품 제작·실증 지원, 인력양성 등 팹리스 전주기 성장 거점 지원	3,390
반도체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3171-435)	일반회계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및 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000
미래차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구축 (3171-434)	일반회계	○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및 신규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을 통합 지원할 One-Stop 검증센터 구축	4,300

주: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소관 세부사업 기준